

방송통신사무소 공고 제2023-60호

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
「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」 제50조(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 전송 제한) 위반으로 과태료를 부과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을 배달증명(등기)우편으로 발송하였으나,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「행정절차법」 제14조제4항(송달)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시송달(공고)합니다.

2023년 6월 12일

방송통신사무소장

1. 공고사유: 과태료 고지서 및 독촉장 반송에 따른 공시송달
2. 공고기간: 2023.06.12. ~ 2023.06.25.(14일)
3. 공시송달 대상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	김순희	1967.00.07.	0178220274100002226 0178220274100002227	₩10,800,000 ₩8,316,000	충남 천안시 동남구 신촌 4 로
2	윤여봉	1969.00.01.	0178200274100005917	₩22,302,000	대전시 서구 계룡로 576 번길
3	윤희	1975.00.15.	0178200274100007599	₩31,860,000	전남 여주시 여서로
4	강덕호	1967.00.03.	0178200274100004074	₩31,860,000	인천시 부평구 대정로
5	최남호	1972.00.30.	0178200274100005916	₩31,860,000	대전시 동구 한남로 67 번길
6	송호성	1958.00.13.	0178200274100004087	₩31,860,000	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35 길
7	조종렬	1960.00.10.	0178200274100005909	₩31,860,000	서울시 영등포구 영신로 20 가길
8	한전남	1968.00.24.	0178200274100005912	₩31,860,000	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제일로 63 번길
9	임춘식	1975.00.19.	0178200274100002871 0178200274100005896	₩16,200,000 ₩53,100,000	강원도 강릉시 사천면 한과마을길
10	정성식	1972.00.20.	0178200274100004088	₩29,736,000	충남 천안시 동남구 명동길
11	오정훈	1971.00.28.	0178200274100002875	₩28,620,000	충남 천안시 동남구 청수 10 길
12	이상희	1988.00.29.	0178200274100004086	₩31,860,000	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공원 6 길
13	박수동	1957.00.07.	0178200274100005902	₩5,648,430	대전시 중구 태평로
14	김현태	1975.00.16.	0178200274100004080	₩31,860,000	충남 천안시 서북구 성정 11 길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15	김윤기	1960.00.02.	0178200274100004076	₩31,860,000	충남 홍성군 홍성읍 소양로
16	한정수	1982.00.05.	0178200274100005920	₩31,860,000	충남 천안시 서북구 입장면 성진로
17	한봉암	1975.00.16.	0178200274100005903	₩31,860,000	경기도 평택시 포승읍 여술3길
18	최민우	1982.00.27.	0178200274100005927	₩22,302,000	전북 익산시 부송로
19	윤성준	1983.00.28.	0178200274100003752	₩42,480,000	부산시 사상구 주감로
20	허현수	1970.00.10.	0178230274100001177	₩31,460,000	제주시 서흥4길
21	서은영	1967.00.28.	0178200274100003753	₩13,381,200	대전시 동구 대전로 448번길
22	김수진	1982.00.23.	0178200274100004967	₩8,850,000	대전시 동구 대전로 542번길
23	김대성	1972.00.05.	0178200274100005929	₩22,302,000	대전시 대덕구 신탄진로 756번길
24	조재호	1958.00.21.	0178200274100004929	₩8,850,000	대전시 대덕구 오정로 52번길
25	최득수	1981.00.20.	0178200274100004928	₩1,770,000	충남 서산시 한마음 11로
26	이성주	1972.00.03.	0178200274100004916	₩22,302,000	충남 천안시 서북구 쌍용 11길
27	전덕수	1966.00.02.	0178200274100004920	₩30,980,440	서울시 금천구 가산로
28	장진성	1978.00.01.	0178200274100003751	₩22,302,000	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달안로
29	정연호	1948.00.03.	0178200274100005925 0178200274100005926	₩28,674,000 ₩28,674,000	서울시 동작구 국사봉길
30	양성필	1988.00.28.	0178200274100004924	₩47,790,000	경기도 평택시 송탄로
31	권준일	1981.00.22.	0178220274100001358	₩8,694,000	대전시 동구 대전로
32	강연희	1966.00.03.	0178200274100004930	₩18,727,200	대전시 서구 관저북로
33	최국현	1968.00.15.	0178200274100004897	₩6,637,500	서울시 송파구 올림픽로
34	이천우	1974.00.17.	0178200274100004976	₩9,558,000	대전시 동구 계족로 392번길
35	주식회사 엘제이스트	160111-0382799	0178200274100003298	₩2,612,000	대전시 동구 우암로 177, 지하 1층
36	주식회사 누리텔	160111-0534902	0178200274100010330	₩5,077,500	대전시 동구 은어송로 100, 은어송마을 5단지 503-405
37	유현경	1974.00.03.	0178200274100004902	₩5,310,000	대전시 중구 문창로
38	송성준	1983.00.03.	0178200274100004894	₩6,547,500	서울시 종로구 난계로 29가길
39	김범수	1970.00.10.	0178200274100005921	₩31,860,000	대전시 동구 계족로 512번길
40	김영철	1984.00.26.	0178200274100003756	₩31,860,000	인천시 미추홀구 인하로
41	송광주	1977.00.27.	0178200274100004933	₩31,860,000	세종시 금남면 용포쑈티 2길

구분	대상자	생년월일/ 법인등록번호	과태료 고지번호	과태료	체납자 주소
42	최강	1992.00.07.	0178200274100004235	₩11,505,000	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택지길
43	최국진	1982.00.14.	0178200274100004940	₩22,302,000	대전시 동구 가양남로 13 번길
44	정훈기	1974.00.08.	0178200274100004285	₩6,264,000	광주시 북구 용주로 34 번길
45	김종철	1957.00.03.	0178200274100003749	₩9,558,000	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55 길
46	유한회사 지니	161414-0000570	0178200274100003300	₩10,578,600	충남 서산시 해미면 대곡2길 107, 썬터원룸 303 호
47	김수옥	1962.00.27.	0178200274100004287	₩16,783,200	전북 임실군 오수면 삼일로
48	김낙현	1960.00.16.	0178200274100004954	₩21,999,600	청남 천안시 동남구 복자 1 길

4. 문의: 방송통신사무소 대전관할팀(대전광역시 동구 대전로 757, 6층 ☎ 042-347-2103, 2106)
5. 공고내용: 과태료 부과분에 대하여 납부방법 안내 및 독촉을 위한 고지서가 수취인 불명, 폐문부재 등의 사유로 반송되어 공시송달 하오니 대상자는 공고기간 만료 후 10일 이내 납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6. 납부방법: 인터넷지로(giro.or.kr) 또는 NTR POPCON(ntrpopcon.go.kr), 모바일앱(NTR POPCON)에서 고지번호로 납부 (수납기관 : 방송통신위원회 방송통신사무소)
7. 가산금 및 증가산금 등 안내
 - 가.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납부기한을 경과한 날부터 체납된 과태료에 대하여 첫째달에 3% 가산금을 합산하여 고지 징수하고, 체납 과태료를 계속하여 납부치 않을 경우 납부 기한이 매 1개월 경과할 때마다 체납 과태료의 1.2% 증가산금(重加算金)을 추가 고지 징수하게 됩니다.
 - 나. 증가산금은 60개월까지 매월 부과하게 되며, 가산금 3%와 증가산금을 합하여 최고 75%에 달할 때까지 부과됩니다.
 - 다. 고지금액을 납부치 않을 경우 가산금과 함께 독촉장이 발부되며, 계속하여 납부하지 않을 경우 「국세징수법」 제24조에 따라 채권, 동산, 부동산, 유가증권, 무체재산권 등 대상자의 재산을 압류하여 강제징수 함을 알려드립니다.
 - 라. 또한, 지정된 납부기한 내에 과태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때에는 「질서위반행위규제법」 제52조에 따른 관허사업의 제한, 제53조에 따른 신용정보의 제공 및 제54조에 따른 30일 이내 감치 등의 불이익이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.